

계룡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강수량 관측 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누계잔액(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장기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계룡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재해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해업무담당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해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해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